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8. 7. 31. (규정 제76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이하 “선정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제2조(위원의 의무) ① 총장임용추천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켜야 한다.

③ 선거에 관하여 선정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신고 등을 한 사람이 원하는 때에는 그 신상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증명자료, 그 밖의 후보자의 신상·경력·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의 비밀을 불필요하게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선정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이의제기·신고 등이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에 취임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합동연설회 등의 공고) 위원장은 선정규정 제26조에 따라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그 일시와 장소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위”라 한다)와 사전에 협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권

제1절 직원·조교 선거권 등

제4조(직원인 선거권자) ① 직원이란 총장이 임용발령을 하는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직된 공무원인 직원·대학회계직원(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직원인 선거인(이하 “직원선거인” 이라 한다)은 선정규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제5조(조교인 선거권자) ① 조교란 선거인 공고일 현재 총장이 임용발령하여 본교에 공무원인 조교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조교인 선거인(이하 “조교선거인” 이라 한다)은 선정규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직원·조교 선거인의 투표결과 환산방법) ① 직원·조교 선거인(직원선거인과 조교선거인을 합산한다)의 투표비율은 교원인 선거인(이하 “교원선거인” 이라 한다)수의 100분의 14로 한다.

② 직원·조교 선거인의 투표결과는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직원·조교 선거인의 총투표수를 직원·조교의 총선거인수분의 후보별 유효득표수의 비율로 배분하되 정수를 우선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이하 5자리는 절사)하여 큰 순서부터 잔여분을 배정한다.

예시) 교원선거인 수가 114명인 경우 직원·조교 선거인에게 인정되는 총 투표수는 15.96표이다. 직원·조교 총선거인 수가 167명, A후보의 직원·조교 선거인 유효 투표수가 100명인 경우 A후보의 직원·조교 득표수는 $15.96 \times 100 / 167 = 9.5569$ 표 (후보별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여 큰 순서부터 잔여 표를 추가 배정)

제2절 학생 선거권 등

제7조(학생인 선거권자) ① 학생이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및 특수대학원생)을 말한다.

② 학생인 선거인(이하 “학생선거인” 이라 한다)은 선정규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학생선거인의 투표결과 환산방법) ① 학생선거인의 투표비율은 교원선거인수의 100분의 6으로 한다.

② 학생선거인의 투표결과 산정방법은 제6조제2항의 직원·조교선거인의 투표결과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제3절 선거인명부 작성

제9조(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원선거인명부는 교학과(교무팀), 직원선거인 명부는 총무과(총무팀), 조교선거인 명부는 교학과(교무팀), 학생선거인 명부는 교학과(입시학생팀) 및 대학원에서 작성한다.

제4장 선거에 관한 각종 서류의 서식 등

제10조(후보자 등록 신청서류) ① 선정규정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기탁금,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후보자의 인영 등은 관할선관위에서 정하는 서식과 방법에 따른다.

② 선정규정 제21조제1항제4호의 후보자 추천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본교에 재직 중인 자는 제외하며, 교원선거인 중 5명 이상의 추천서(중복추천 허용)가 포함되어야 한다) 후보자는 필요시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추천위원회에 필요한 수량의 추천서 교부를 요청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대상자인적사항” 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추천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후 추천인 1명당 추천서 1장을 받아야 한다.

③ 선정규정 제21조제1항제3호·제5호의 재직증명서와 보직사퇴서는 본교에서 발행 또는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④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는다.

제11조(기탁금 납부) 후보자는 선정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 납부는 관할선관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탁금 예치 증명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후보자의 추천위원회 제출 서류) 선정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서식에 따른다.

1. 이력서[별지 제5호서식]
2. 공정행위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3. 공약준수 서약서[별지 제7호서식]
4. 대학발전 계획서[별지 제8호서식]

제13조(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 ①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검증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진위를 검증하여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거나 타 후보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3일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하고, 해당 후보자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공개한다.

제14조(기호 추천) 추천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5일 이내에 각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관하에 후보자의 기호를 추천에 의해 결정하되 기호추첨 순서는 등록순서에 의하며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단,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호추첨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선거인명부) 선정규정 제20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정정 등의 사무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선거공보의 제작 및 배포) ①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를 배포한다.

②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의 승인 없이 개별적으로 선거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선정규정 제25조에 따른 선거 공보물은 추천위원회에서 선거권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으로 정해진 기일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공보·선전벽보의 제출·정정) 선정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선거공보 확인은 별지 제15호서식, 선정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공보 및 선정규정 제29조의 선전벽보 제출은 별지 제16호서식, 선정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선거공보 및 선정규정 제29조 선전벽보의 정정 요청은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이의신청서 등) ① 선정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한다.

② 선정규정 제25조제8항에 따른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 선정규정 제28조제4항에 따른 선거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 정보 등에 대한 이의신청, 선정규정 제29조에 따른 선전벽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③ 선정규정 제41조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공고 등) 선정규정 제39조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공고는 별지 제21호서식, 선정규정 제41조제3항·제42조제5항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의 무효·취소에 대한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20조(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① 선정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주최하는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를 제외하고, 학내의 기관, 단체, 선거인은 임의로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 정견발표회, 간담회, 설명회, 그 밖의 집회,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다.

② 합동연설회는 추첨에 의해 순서를 정하고 각 후보별 발표시간은 20분 내로 한다.

③ 공개토론회에서 후보자의 좌석은 추첨으로 배치하며, 답변순서는 순차적으로 교대로 하고, 답변시간은 각 후보자에게 동일한 시간을 부여한다.

제21조(선거운동)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정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동안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을 통하여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다.

제22조(선거공보) ① 선정규정 제25조에 따른 선거공보의 규격·면수 및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격 :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2. 면수 : 12면 이내

3.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 :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② 선거공보의 제출수량은 예상 선거인수에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작성·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10일 전까지 예상 선거인수, 선거공보의 작성·

제작에 필요한 세부사항, 선거공보의 확인일자 및 확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선거공보(안) 등의 사항을 공지하며, 추천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 전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작성 및 제출 수량, 제출장소, 제출기한을 통보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5일 전까지 선거공보의 제출수량을 공지한다.

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수량이 선거인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등재순(교원, 직원, 조교, 학생순)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한다.

⑥ 추천위원회가 선정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관할선관위가 우송하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학 우편함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있고, 그 준비 및 필요한 사항은 관할선관위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할선관위와 협의된 방법과 기한을 준수하여 선거공보를 관할선관위에 인도한다.

⑦ 선정규정 제25조제8항에 따른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추천위원회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후보자와 이의신청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선정규정 제25조제8항의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공보의 제출·접수 또는 발송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3조(소형인쇄물 제작) ① 후보자는 정책 홍보를 위하여 소형인쇄물 1종을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② 후보자가 소형인쇄물을 제작한 경우 추천위원회가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이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형인쇄물은 다음 각 호의 규격에 따라 16면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지 크기 : 길이 29.7센티미터, 너비 21센티미터 이내

2. 유형 : 인쇄물

3. 제출부수 : 30부

④ 소형인쇄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실대로 게재되어야 한다.

1. 후보자의 주요 인적사항(사진, 성명, 연령)

2. 후보자의 주요 경력과 교육 및 연구 업적

3. 후보자의 상훈 수여 및 징계 처분 사항

4. 대학 운영에 관한 후보자의 소견

5. 대학 발전을 위한 후보자의 주요 정책과 실행 계획

⑤ 소형인쇄물의 배포 시기 및 금지 사항 등 기준은 후보자가 확정되면 추천위원회가 이를 공고한다.

⑥ 제출된 소형인쇄물은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선정규정 또는 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출기한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⑦ 소형인쇄물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소형인쇄물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24조(소형인쇄물 등 배부) ① 선정규정 제30조에 의거 소형인쇄물을 배부하는 우편

발송의 방법에는 대학우편함을 이용하는 방법을 포함하며, 발송 시기 등은 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후보자는 선정규정에 따른 발송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소형인쇄물 등을 발송, 게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25조(선거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① 총장은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선정규정 제28조제1항의 선거홈페이지를 학내 정보통신망에 개설·운영한다.

② 선거홈페이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와 총장이 협의하되, 다음 각 호의 구성과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1. 선거관련 정보 제공 : 관할선관위, 추천위원회, 총장 등에서 선거와 관련된 각종 공고,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선거에 관한 법령·규정을 안내하는 기능
2. 후보자정보 제공 : 선거후보자의 경력·학력·연구실적 등에 관한 정보, 발전계획서, 선거공보를 게시하여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3. 후보자의 정책 홍보 : 각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 공약 등을 글, 도화, 동영상으로 홍보하고 게시판 등을 통해 선거인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기능
4. 추천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신고 등을 접수하는 기능
5.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의 실황중계 또는 그 녹화영상물을 게시하는 기능

③ 후보자가 선정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영상에는 후보자의 주요경력과 연구업적, 주요공약 및 본교 발전방안 등에 대한 견해 또는 정책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다만, 개인연설회·찬조연설·좌담회·토론회 등의 성격을 띠거나 그러한 성격을 갖는 내용은 담을 수 없다.

제26조(선전벽보) ① 선정규정 제29조에 따른 선전벽보의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한다.

② 후보자가 제출할 선전벽보의 수량은 추천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게시 수량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하고, 후보자가 보완 게시를 위하여 보관할 수량은 추천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게시 수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대로 한다.

③ 후보자는 추천위원회가 게시한 선전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게시하려는 때에는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전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제27조(선거에 관한 행정지원) ① 대학본부와 각 기관은 추천위로부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종사하거나 관계되는 대학 행정요원과 관리요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28조(기타사항) 이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제762호, 2018. 7. 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 적용 등에 관한 특례) 이 시행세칙 공포 후 최초로 실시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의 경우 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각종 기간 및 기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가 조정하여 공지하는 기간 및 기한을 이 시행세칙상의 관련 기간 및 기한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15.08.28. 개정 예규 제695호)은 폐지한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서약서

본인은 한국체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관리하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후보자(예정자)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총장선거와 관련된 각종 법령과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선거관리와 관련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 스스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거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조치하는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소속·직급 등) 성명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후보자 추천서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소 속	
	직 급	
	생 년 월 일	(만 세)
	주 소	

위 사람을 한국체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생년월일	학과명	추천연월일	인

- ※ 1. 한국체육대학교 재직 전임교원 5인의 추천을 받아야 함
 2. 추천자 1인당 본 양식에 의하여 1장씩 제출하여야 함
 3. 추천자“@” 란은 서명 또는 날인 모두 가능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 후보자 선거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 후보자 선거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번호, 근무처,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학력, 경력, 병역사항, 상훈, 연구업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문서 보존기간 까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력 서

사 진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으로
부착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현근무처		직 위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	자 택 :	휴대전화 :
e-mail			

2. 학력(대학이상 학력만 기재)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3. 경력(별지 추가 사용 가능)

기 간	기 관	직위.직급	비 고

4. 병역사항

병역구분	복무기간	군별	계급	병과
필/면제				

5. 상 훈

종류	수여일자	수여기관

6. 징 계

종류	징계일자	징계기관

7. 연구업적 목록(별지 추가 사용 가능)

항 목	논문	저서	특 허	기타 각종실적	비 고
연구업적 총 실적	편	편	건	건	

① 논문 및 저서

연번	구분	이름	공저 차수	제 목	게재일자 (등록일자)	게재학술지명 (권,호,쪽)	비고

주) 구분은 국제전문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 등으로 구분하되, 자세한 사항은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② 특허

연번	이름	특허명	등록일자	등록번호	국가명	비고

③ 기타 각종실적

연번	이름	실적내용	일자	국가명	비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후보자 :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중

공정행위 서약서

본인은 제○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 후보자로서 선정 절차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선정과정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을 준수한다.
2.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대결로 총장선거 후보자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하며, 비난·음해 등 선량한 풍습, 그 밖의 선거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총장선거 후보자 상호간의 협약된 사항은 철저히 준수하고 선정 결과에 승복한다.

년 월 일

후보자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공약준수 서약서

본인은 제○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후보자로서 대학발전
계획서에서 제시한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대학발전 계획서

※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세,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대학경영방침 및 대학경영 선진화 계획, 조직 및 인사관리, 공직윤리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 A4용지 15매 이내)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선거 후보자 기호 공고

제○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선거에 사용할 기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호	후보자 성 명	생년월일	현 근무처	비고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기호추첨 위임장

성명 :

본인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14조에 의거 후보자 기호를 추첨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음 대리인에게 추첨에 관한 모든 결정을 위임합니다.

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년 월 일

위임인 :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후보자 기호추첨 대리인 수락서

대리인 성명 :

본인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14조에 의거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선거에 등록한 후보의 대리인으로서 기호추첨에 임할 것을 수락합니다.

년 월 일

대리인 : (인)

[별지 제11호서식]

<표 지>

년 월 일 실시 한국체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선거인명부 (교원 · 직원 · 조교 · 학생)

작성: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정: 년 월 일

○○대학(원)(○책 중 ○권)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내 지>

등재번호 ①	소속 ②	성별 ③	생년월일 ④	성명 ⑤	투표용지수령인⑥			비고 ⑦
					제1차 투표	제2차 투표	결선 투표	

주: 1. 명부기재방법

- ① “등재번호”칸에는 선거인구분(교원, 직원, 조교, 학생을 말한다) 및 소속기관 단위로 그 선거인 성명의 가, 나, 다순(성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년월일 순)으로 적습니다.
- ② “소속”칸에는 한국체육대학교의 주소를 대신하여 소속을 적습니다.
- ③·⑤ “성별”칸과 “성명”칸은 선거인의 성별과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 ④ “생년월일”칸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
- ⑥ “투표용지수령인” 칸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하거나,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등을 실시할 때에 한정하여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합니다.
- ⑦ “비고”칸의 기재와 선거인명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 관할선관위는 선거인명부확정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록자·오기된 자를 위탁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칸에 적습니다. 다만, 관할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 후에는 투표관리관이 그 사실을 비고칸에 적습니다.
- ⑧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선거방식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인명부 작성 시 윗 칸과 동일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상동” 또는 “#”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쪽을 달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3.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철하여 선거인명부의 표지와 끝 쪽의 대철부분에 위원장의 장의 직인을 찍습니다.
4. 장당 15명정도 기재되도록 적습니다.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1)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작성하고 ○ 책으로 (분철)작성하였음.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2)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였음.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3)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 확정되었음.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주: (3)항은 명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변경사항의 수정에 따라 추가로 명부에 올린 후 명부의 확정 시 끝부분에 적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구 성 원 수 (년 월 일 현재)	선 거 인 명 부 에 등재된 선거인수	구성원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율(%)	비 고

주: 구성원수는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구성원수를 적습니다.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

① 구성원수 (년 월 일 현재)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③ 직권수정에 의한	④ 이의신청 등의 결정에 의한		⑤ 확정된 선거인수	구성원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율 (%)	비고
			감	증			

주: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①칸은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구성원수를 적습니다.
 - ②칸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 통보서상의 선거인수를 적습니다.
 - ③칸은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사망자·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제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 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적습니다.
 - ④칸은 선거인명부 열람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누락자 등에 대한 명부등제 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적습니다.
 - ⑤칸은 ②칸의 선거인수에 ③·④칸의 수를 증감한 수를 적습니다.
2. 이 통보서에는 별지 <선거인명부 수정상황>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별 지>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성명	수정내용		수정사유	비고
		수정전	수정후		

주: . “수정사유” 칸은 이의제기 등에 대한 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제, 사망, 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오기사항 등의 통보서

등재번호	성명	오기사항 등	비고

주: “오기사항 등” 칸에는 오기·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록자 등에 대한 사실을 적습니다. (예: 성명 중 “○○”은 “××”의 오기임, ○년 ○월 ○일에 퇴직함, ○년 ○월 ○일 사망함 등)

한국체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선거공보(안) 확인서

기호		성명	
----	--	----	--

한국체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위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안)을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인함.

■ 공보확인 내용

기재사항	기재 여부	증빙서류 대조확인	위원회 확인
성명, 기호 및 사진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 연구업적 목록			
주요 공약 및 본교 발전방안			

확인 결과	
----------	--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선거공보·선전벽보 제출서

1. 선거명: 한국체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2. 후보자성명:
3. 제출내역

구분	작성수량	제출하여야 할 수량(가)	제출수량(나)	부족수량(가-나)	비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한국체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선거공보·선전벽보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중

- 주: 1. “제출하여야 할 수량”은 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 수량을 적습니다.
2. “제출수량”은 위원회에 실제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

선거공보·선전벽보 정정요청서

선 거 명		한국체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후보자	성 명			기 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1. 정정 매수:
2. 정정 내용:
3. 정정 이유:

한국체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선거공보·선전벽보 내용을 정정하고자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후 보 자 ○ ○ ○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중

- 주: 1. 이 신청서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정 매수"란에는 위원회에 제출한 매수 중 정정하고자 하는 매수를 모두 적습니다.

선거인명부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의 신청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연락처	
이의 사실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한국체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 ○ 인

붙 임: 증명서류 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중

주: 1. “소속 및 직급” 칸에는 이의신청자가 본교 소속의 선거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2. “연락처” 칸에는 위원회로부터 연락 및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3. 이의신청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거공보)·(후보자 정보)·(선전벽보)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신청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연락처	
이의신청 대 상 자	후보자 성명	
이의사실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p>한국체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공보)·(후보자정보)·(선전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훈·연구실적등·그 밖에 후보자관련 정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이의신청자 ○ ○ ○ 인</p> <p>붙임: 증빙자료 00부</p> <p>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중</p>		

주: 1. “이의신청 내용”칸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상(경력, 학력, 학위, 상훈·연구실적등, 그 밖에 후보자관련 정보) 및 그 게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소속 및 직급”칸에는 이의신청자가 본교 소속의 선거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3. “연락처”칸에는 위원회로부터의 연락 및 처리결과와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중 선택)를 적습니다.
 4. 이의신청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증빙자료란 이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그 밖의 자료를 말하며,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이의제기서

이 의 제 기 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연락처	
이의제기 대 상 자	선정된 총장임용후보자의 성명	
이의제기 사 유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체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이의제기자 ○ ○ ○ 인</p> <p style="margin-top: 20px;">붙 임: 증빙자료 부</p> <p style="margin-top: 20px;">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중</p>		

- 주. 1. “이의제기 내용” 칸에는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대상(경력, 학력, 학위, 상벌·연구실적등) 및 그 게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소속 및 직급” 칸에는 이의제기자가 본교 소속의 선거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3. “연락처” 칸에는 위원회로부터의 연락 및 처리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중 선택)를 적습니다.
 4.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증빙자료란 이의제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그 밖의 자료를 말하며,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면 이의제기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1호서식]

공고 제20 - 호

한국체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결과 공고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39조에 의거하여 한국체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결과]

선정순위	기호	성명	득표수	득표율(%)
1순위				
2순위				

※ 본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41조(선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의거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공고 제20 - 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무효·취소) 공고

한국체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있어 다음과 같이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이 (무효) (취소)로 결정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다 음

기호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종류 및 사유	발생일